

② 대상법령 및 일정

○ 대상법령

- 5개법령 : 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 인감증명법, 국민연금법, 의료보호법
- 2개시행령 · 시행규칙
 - 의료보험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 추진일정 : '97. 12월까지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③ 주요개정내용

○ 주민등록법에 주민카드 근거 명시

- 주민카드 발급 및 정보수록 근거 신설(제17조의8 ③)
 - 주민카드 모형, 발급, 수록항목, 운영절차 등
 - ※ 인감증명법, 도로교통법등 각 개별법에 근거 명시
- 주민카드발급센타설치근거(제17조의8④, 제17조의9③)
 - 중앙에 발급센타를 설치, 관계기관 자료수록 및 발급
 - 카드 일제발급후 자료분산규정 신설

- 주민카드정보 열람자격(제17조의 9 ②③)
 - 주민카드열람자의 자격과 범위
 - 발급센타에 수록된 정보의 열람권 등

○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현행법 준용 및 보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2항
 - 개인정보유출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주민등록법제21조제2항5조
 - 개인정보유출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 주민등록법제21조 ② 규정 신설
 - 권한 없이 열람한자 및 본인동의 없이 주민카드를 사용한자
 - 카드를 고의로 훼손, 위조, 변조한 자
 - 주민카드를 이중으로 발급받아 사용한 자
 - ※ 위반시는 3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 형법제314조,316조
 - 전산망해킹시 5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국가 배상법제2조, 민법제750조, 751조
 - 피해배상 및 보상규정

住民登録法中改正法律(案)

1. 提案理由

- 주민등록증의 경신주기가 도래됨에 따라 21C 정보화시대에 맞는 『주민카드』로 경신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증명을 주민카드에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 마련과 개인의 사생활보호 관련조항을 보완하고
- 국민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기간 조정 및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가입자 등의 별도 주소변경신고절차를 전입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하기 위함

2. 主要骨子

- 가. 주민등록증의 명칭을 주민카드로 변경하고, 주민카드의 발급 및 주민카드에 수록되는 항목의 수록근거를 규정하며, 주민카드열람자의 자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주민카드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주민카드 악용자의 벌칙을 강화함
(안 제17조의8제3항내지4항, 제17조의9제2항, 제21조제2항)

나. 전입신고만으로 주소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법령을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생활보호법·의료보험법·장애인복지법이외에 의료보호법·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및 도로교통법까지 확대하고, 증빙서류 첨부대신 증명에 의한 확인사항을 주민등록사항이외에 주민카드에 수록되는 항목까지 확대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함

(안 제14조의2, 제17조의9)

다. 주민카드재발급수수료를 분실재발급자이외에 훼손등으로 인한 재발급자까지 확대하여 주민카드의 본인 관리책임을 강화함

(안 제17조의8제5항)

라. 주민등록증분실시 7일이내 신고토록 하고 7일을 넘겨 분실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규정을 없애는 한편, 등·초본 감축추진을 위해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절차를 간소화 함

(안 제17조의8제10항, 제18조의2제1항)

마. 기타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함

(안 제17조의2, 제21조제1항)

法律 第 號

住民登錄法中改正法律(案)

住民登錄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의2의 本文中 "醫療保險法 및 障礙人福祉法"을 "醫療保險法, 國民年金法, 醫療保護法, 公務員및私立學校教職員醫療保險法, 障礙人福祉法 및 道路交通法"으로 한다.

第17條의2의 題目 "催告와 職權措置"를 "事實調査와 職權措置"로 하고, 第1項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申告義務者가 이 法에 規定된 期間내에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不實하게 申告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一定한 期間을 정하여 申告義務者에게 申告할 것을 催告하여야 한다. 第13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通報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住民登錄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第10條에 規定된 事項에 관하여 申告된 내용이 事實과 다르거나 申告義務者가 이 法에 規定된 期間내에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不實하게 申告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事實을 調査할 수 있다."로 하고,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事實調査한 事項은 一定한 期間을 정하여 申告義務者에게 申告할 것을 催告하여야 한다. 第13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通報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第17條의2第2項을 第3項으로, 3項을 第4項으로 하고, 内容중 "第1項 또는 第2項"을 "第2項 또는 第3項"으로 한다.

第17條의2第4項을 第5項으로 變更하고, 内容중 "第3項"을 "第4項"으로 하고 後段에 "이 경우, 事實調査의 방법으로 職權措置한 때에는 職權措置 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를 新設하며, 同條에 第6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나 區廳長 또는 그 命을 받은 公務員은 그 權限을 證明하는 證표를 携帶하고 이를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第17條의8의 題目중 "住民登錄證"을 "住民카드"로 하고, 第1項중 "住民登錄證"을 "住民카드"로 하며, 同條에 第2項 내지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住民카드에는 住民登錄사항을 收錄한다. 이 경우 收錄하는 事項은 第7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票화일에 의하고 收錄되는 事項은 內務部令으로 정한다.

③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카드를 發給함에 있어 第2項에 의한 住民登錄事項이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印鑑證明法, 道路交通法, 國民年金法, 醫療保險法, 醫療保護法, 公務員및私立學校教職員醫療保險法에 의한 事項을 收錄할 수 있다.

④內務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카드 관련사항 收錄을 위하여 中央에 住民카드發給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長은 住民카드에 收錄되는 資料를 內務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第17條의8第2項 내지 第8項을 각각 第5項 내지 第11項으로 하고, 第2項 내지 第4項과 第6項의 内容중 "住民登錄證"을 "住民카드"로, "住

民登錄證"을 "住民카드"로 하며, 第5項중 "住民登錄證의 發給에 있어서는"을 "住民카드를 최초로 發給할 때에는"으로, "住民登錄證"을 "住民카드"로, "紛失者에 대하여 住民登錄證을"을 "紛失者등 住民카드를"로 하며, 第7項중 "住民登錄證을 紛失한 者는 紛失한 날로부터 7日이내에"를 "住民카드를 紛失한 者는 즉시"로, "住民登錄證"을 "住民카드"로 하며, 第8項중 "住民登錄證이"를 "住民카드가"로, "住民登錄證의 再發給申請을 할 수 있다."를 "住民카드를 回收한 다음 再發給申請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第17條의9의 題目중 "住民登錄證"을 "住民카드"로 하고, 本文을 第1項으로 하며, 内容중 "本籍, 住所, 姓名, 生年月日, 住民登錄番號, 兵役事項, 寫眞의"를 "이 法에 의한 住民登錄事項 기타 住民카드에 收錄되는 事項 등의"로 하고, "住民登錄證"을 "住民카드"로 하며,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住民카드의 확인을 위하여 閱覽할 수 있는 者의 資格과 閱覽의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7條의10의 題目중 "住民登錄證"을 "住民카드"로 하고, 第1項과 第3項중 "住民登錄證"을 "住民카드"로 하며, 第2項중 "住民登錄證"을 "住民카드"로, "住民登錄證을"을 "住民카드를"로 한다.

第18條의2第1項의 本文 後段에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審査를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新設한다.

第19條를 削除한다.

第21條第1項第1號중 "第17條의8第2項"을 "第17條의8第3項"으로, "住民登錄證"을 "住民카드"로, "7월이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지나도록 주민카드"로 하며, 同項 第2號중 "住民登錄證"을 "住民카드"로 하고, 同條 第2項第1號중 "住民登錄證"을 "住民카드"로, 同項 第4號중 "住民登錄證"을 "住民카드"로 하며, 同項에 第6號 내지 第9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6. 第17條의9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權限없이 住民카드의 내용을 閱覽한 者
7. 本人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의 住民카드를 閱覽하거나 使用한 者 또는 이에 협조한 者
8. 住民카드를 故意的으로 훼손한 者와 偽造 또는 變造한 者
9. 正當한 事由없이 住民카드를 二重으로 發給받아 사용한 者

< 附 則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住民카드의 發給時期에 관한 特例) ① 이 法에 의한 住民카드의 發給時期는 이 法 시행일로부터 1年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시·도 別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카드가 發給되기전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登錄證을 發給하여 이를 使用할 수 있다.

③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發給받은 住民登錄證은 1999年 9月 30日까지 그 效力을 가진다.

第3條 (다른 法令의 改正)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使用하고 있는 "住民登錄證"은 이 法에 의한 "住民카드"로 본다.

新 · 舊條文對比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第14條의2 (他 法令에 의한 申告와 의 관계) 住民의 居住地移動에 따른 住民登錄의 轉入申告가 있을 때에는 兵役法, 鄉土豫備軍設置法, 民防衛基本法, 印鑑證明法, 生活保護法, 醫療保險法 및 障 碍人福祉法에 의한 居住地 移動의 轉出申告와 轉入申告를 한 것으 로 본다.	第14條의2 (他 法令에 의한 申告와 의 관계) ----- ----- ----- ----- 醫療保險法, 國民年金法, 醫 療保護法, 公務員및私立學校敎職 員醫療保險法, 障 碍人福祉法 및 道 路交通法 -----	· 주민카드에 수록되는 證 明의 주소변경절차 간소화를 위해 해당 법령 추가
第17條의2 (催告와 職權措置) ①市 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申告義 務者가 이 法에 規定된 期間내에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不實하 게 申告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一定한 期間을 정하여 申告義務 者에게 申告할 것을 催告하여야 한다. 第13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通報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第17條의2 (事實調査와 職權措置) ①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住 民登錄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第10條에 規定된 事項에 관하여 申告된 내용이 事實과 다르거나 申告義務者가 이 法에 規定된 期 間내에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不實하게 申告된 것을 발견한 때 에는 그 事實을 調査할 수 있다.	· 부적합한 직권조치절차 보완 < 현행 > ① 최고(공고)⇒사실조사⇒직권조치 < 개정 > ① 사실조사⇒최고(공고)⇒직권조치
< 新 設 >	②事實調査한 事項은 一定한 期 間을 정하여 申告義務者에게 申 告할 것을 催告하여야 한다. 第 13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通 報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 조문정리 - 제19조(사실조사)와 통합
②申告義務者에게 催告를 할 수 없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③(現行과 같음)	

현 행	개정안	개정 이유
<p>바에 의하여 一定한 期間을 정하여 申告할 것을 公告하여야 한다</p> <p>③申告義務者が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 期間내에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事實調査와 公簿上의 根據 또는 統·里長의 확인에 의하여 住民登錄을 하거나 登錄事項을 訂正 또는 抹消하여야 한다.</p> <p>④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權措置를 한 때에는 14日이내에 그 事實을 申告義務者에게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告하여야 한다. (新 設)</p> <p>< 新 設 ></p>	<p>④-----第2項 또는 第3項-----</p> <p>⑤-----第4項-----</p> <p>----- 이 경우, 事實調査의 방법으로 職權措置한 때에는 職權措置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⑥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나 區廳長 또는 그 命을 받은 公務員은 그 權限을 證明하는 證표를 携帶하고 이를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p>	<p>· 사실조사후 최고 또는 공고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한 사항으로 개별통지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공고절차만 이행토록 함</p> <p>· 제19조와 통합</p>

현 행	개정안	개정 이유
<p>第17條의8 (住民登錄證의 發給과 所持義務) ①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된 者중 17歲이상의 者에 대하여 住民登錄證을 發給한다.</p> <p>< 新 設 ></p> <p>< 新 設 ></p> <p>< 新 設 ></p>	<p>第17條의8 (住民카드의 發給과 所持義務) ①-----</p> <p>住民카드를 -----</p> <p>②住民카드에는 住民登錄사항을 收錄한다. 이 경우 收錄하는 事項은 第7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票화일에 의하고 收錄되는 事項은 內務部令으로 정한다.</p> <p>③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카드를 發給함에 있어 第2項에 의한 住民登錄事項이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印鑑證明法, 道路交通法, 國民年金法, 醫療保險法, 醫療保護法, 公務員및私立學校教職員醫療保險法에 의한 事項을 收錄할 수 있다.</p> <p>④內務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카드 관련사항 收錄을 위하여 中央에 住民카드發給센터를 設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長은 住民카드에 收錄되는 資料</p>	<p>· 명칭변경</p> <p>· 주민카드의 항목 수록 근거 명시</p> <p>· 주민카드에 통합되는 7개사항의 수록 근거 명시</p> <p>· 주민카드 발급을 위한 발급센터 설치근거와 주민카드에 수록되는 자료의 통보를 의무화함</p>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를 內務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登錄證을 發給받은 年齡에 달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住民登錄證의 發給을 申請하여야 한다.	⑤----- 住民카드 -----	· 항목조정 · 명칭변경(주민등록증→주민카드) - 이하 같음
③內務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으로 하여금 住民登錄證을 일제히 更新하거나 檢印하게 할 수 있다.	⑥----- 住民카드를 -----	· 항목조정 · 명칭변경
④住民登錄證 및 그 發給申請書의 書式과 그 發給節次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⑦住民카드 -----	· 항목조정 · 명칭변경
⑤住民登錄證의 發給에 있어서는 手數料를 徵收하지 못하며, 住民登錄證의 發給을 理由로 租稅 기타 如何한 名目の 公課金도 徵收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紛失者에 대하여 住民登錄證을 再發給할 때에는 內務部令으로 정하는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⑧住民카드를 최초로 發給할 때에는 ----- 住民카드 ----- ----- 紛失者등 住民카드를 -----	· 주민카드발급 수수료 징수 근거 - 최초발급 : 자치단체 부담 - 재발급 : 본인 부담 · 항목조정
⑥住民登錄證을 發給받은 者는 常時 住民登錄證을 所持하여야 한다.	⑨住民카드를 ----- 住民카드를 -----	· 항목조정 · 명칭변경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⑦住民登錄證을 紛失한 者는 紛失한 날로부터 7日이내에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住民登錄證의 再發給申請을 하여야 한다.	⑩住民카드를 紛失한 者는 즉시 ----- 住民카드 -----	· 주민카드분실신고기간 삭제 · 주민카드분실신고 기관 확대 - 온-라인신고제 실시 · 항목조정
⑧住民登錄證이 훼손되어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民登錄證의 再發給申請을 할 수 있다.	⑩住民카드가 ----- 住民카드를 回收한 다음 再發給申請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항목조정 · 명칭변경 · 훼손된 주민카드 소지시 업무운영공무원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함
第17條의9 (住民登錄證에 의한 확인)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公共團體, 社會團體, 一般企業體 등에서 그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各號의 경우에 17歲이상의 者에 대하여 本籍, 住所, 姓名, 生年月日, 住民登錄番號, 兵役事項, 寫眞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證憑書類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當該人의 住民登錄證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7條의9 (住民카드 -----) ①----- 이 법에 의한 住民登錄事項 기타 住民카드에 收錄되는 事項 등의 ----- 住民카드 -----	· 명칭변경 · 항목신설 · 주민카드에 의해 확인가능한 사항을 주민등록사항이외의 수록항목까지 확대 · 명칭변경
1. 民願書類 기타 書類를 接受할 때	1. (現行과 같음)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2. 特定人에게 資格을 인정하는 證書를 發給할 때 3. 기타 身分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 新 設 >	2. (現行과 같음) 3. (現行과 같음) ②住民카드의 확인을 위하여 閱覽할 수 있는 者의 資格과 閱覽의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주민카드를 열람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무권한자의 열람 방지
第17條의10 (住民登錄證의 提示要求) ①司法警察官吏는 間諜의 索出, 犯人의 逮捕등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住民의 身元 또는 居住關係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7歲이상의 者에 대하여 住民登錄證의 提示를 要求할 수 있다.	第17條의10 (住民카드) ①	· 명칭변경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登錄證의 提示를 要求한 司法警察官吏는 住民登錄證을 提示하지 아니한 者로서 身元을 證明하는 證票나 기타 方法에 의하여 그 身元이나 居住關係가 확인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 犯罪의 嫌疑가 있거나 間諜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때에 限하여 隣近 關係官署에서 그 身元이나 居住關係를 밝힐 것을 要求할 수 있다.	②住民카드 住民카드를	· 명칭변경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③第1項의 司法警察官吏가 住民登錄證의 提示要求를 할 때에는 親切과 禮儀를 지켜야 하며 미리 그 身元을 標示하는 證票를 提示하여야 한다. 다만, 征服勤務中에는 例外로 한다.	③住民카드	· 명칭변경
第18條의2 (住民登錄電算情報資料의 이용등) ①第7條의2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票화일등 住民登錄電算情報資料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의 審査를 거쳐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新 設)	第18條의2 (住民登錄電算情報資料의 이용등) ①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의 審査를 요하지 아니한다.	· 등.초본감축을 위해 일부업무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생략하고 자료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함
②(省 略)	②(現行과 같음)	
第19條(事實調査) ①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住民登錄의 正確을 期하기 爲하여 第10條에 規定된 事項에 關하여 申告된 內容이 事實과 相異하다고 認定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때에는 그 事實을 調査할 수 있다.	< 削除 >	· 제17조의2와 통합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市長·郡守나 區廳長 또는	< 削除 >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그 命을 받은 公務員은 그 權限을 證明하는 證票를 携帶하고 이를 미리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21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萬원이하의 罰金 또는 拘留에 處한다.	제21조 (罰則) ①(現行과 같음)	
1. 第17條의8第2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證發給年齡에 달한 者로서 發給通知를 받고도 正當한 事由없이 7月이내에 住民登錄證發給申請을 하지 아니한 者	1. 第17條의8第3項 -- 住民카드 ----- 發給申請期間이 經過한 후 30日이 지나도록 住民카드--	· 주민카드에 7개사항 통합수록근거 삽입에 따라 관련조항 ②항이 ③항으로 변경됨 · 문구정리
2. 正當한 事由없이 第17條의8第7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證紛失申告를 한 날로부터 80日이내에 住民登錄證再發給申請을 하지 아니한 者	2. ----- 住民카드 ----- 住民카드-----	· 명칭변경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②(現行과 같음)	
1.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나 住民登錄 또는 住民登錄證에 관하여 虛偽의 事實을 申告 또는 申請한 者	1. ----- 住民카드 -----	· 명칭변경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2. 第17條의2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催告나 公告를 받고도 住民登錄을 忌避할 目的으로 期間內에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現行과 같음)	
3. 正當한 事由없이 第17條의2第3項이나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實調査를 拒否·忌避 또는 妨害한 者	3. (現行과 같음)	
4. 住民登錄證을 債務履行의 확보 등의 手段으로 제공한 者 또는 그 제공을 받은 者	4. 住民카드를-----	· 명칭변경
5. 第18條의3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5. (現行과 같음)	
< 新 設 >	6. 第17條의9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權限없이 住民카드의 내용을 閱覽한 者	· 주민카드를 권한없이 열람한 자는 처벌토록 규정
< 新 設 >	7. 本人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의 住民카드를 閱覽하거나 使用한 者 또는 이에 협조한 者	· 분실주민카드를 타인이 악용하거나 협조한 자는 처벌토록 규정
< 新 設 >	8. 住民카드를 故意的으로 훼손한 者와 偽造 또는 變造한 者	· 카드를 고의적으로 훼손, 위조, 변조한 자는 처벌토록 규정
< 新 設 >	9. 正當한 事由없이 住民카드를 二重으로 發給받아 사용한 者	· 주민카드를 이중으로 발급받아 악용한 자는 처벌토록 규정

< 附 則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住民카드의 發給時期에 관한 特例) ① 이 法에 의한 住民카드의 發給時期는 이 法 시행일로부터 1年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시.도 별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카드가 發給되기전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登錄證을 發給하여 이를 使用할 수 있다.

③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發給받은 住民登錄證은 1999年 9月 30日까지 그 效力을 가진다.

第3條 (다른 法令의 改正)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使用하고 있는 "住民登錄證"은 이 法에 의한 "住民카드"로 본다.

V. 爭點事項에 대한 內務部 意見

정부에서는 '83년이후 14년이 지난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경신하면서 국민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을 수록한 주민카드를 '98년에 제주도부터 발급하여 '99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등록제도는 왜 필요한가 ?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주민등록제도 자체가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므로 주민등록과 인감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주민등록과 인감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주민등록제도는 1962년 5월 주민등록법을 제정, 국민의 거주관계와 인구를 파악하여 선거, 조세, 취학, 병역, 복지, 주택 등 국가 주요행정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들의 인적사항을 국가가 공증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1968년 11월 주민등록증을 최초 발급한 이후 75년 1차경신을 거쳐 '83년 2차경신한 증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를 없앨 경우 과연 국민들은 편리해지는가 ?, 아니면 불편해지는가 ? 간단하게 보면 국가가 개인정보를 관리하지 않고 국민들은 제증명을 발급받으러 동사무소를 가지 않아도 되므로 사생활이 보호되고 편리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취학이나 입사, 은행·보험 등 금융거래와 실명 확인, 동산·부동산 등의 재산거래, 여권·공무원증·운전면허증·사원증 등 신분증을 교부할 때 본인의 인적사항을 상대방에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명과 나이, 주소 등 기재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대부분의 경우 인후 보증인을 세우게 하든지 변호사 등의 공증을 요구할 것이다. 이때 이름과 나이를 속이고 싶다면 손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보증인을 동원하고 공증을 하는데 소요되는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비용과 시간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지금은 국가가 60원(주민등록등·초본)이라는 적은 비용으로 국민들의 인적사항을 공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큰 부담없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조세, 병역, 교육 등 체제유지에 필요한 가장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가가 관리하고 개인의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는 개연성과 외국에는 없기 때문에 국가나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를 없앨 수는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선거인명부 작성하는데 1 ~ 3일 정도의 시간과 용지대 정도의 비용만 있으면 가능하나 일본에서는 3개월 정도의 기간과 총 6조엔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비능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시·정·촌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 제도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중에 있다. 미국에서도 전국민의 대다수가 사회보장번호를 갖고 있고, 운전면허증에 사회보장번호를 기록하여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자격이 없어도 국민이 원하면 운전면허자격이 없는 신분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 또한 독일 등에서도 전국민의 신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신분증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민카드는 왜 추진하게 되었는가 ?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14년전('83년)에 제작한 것으로 용모 변화 등으로 본인 확인이 곤란하고, 위·변조가 용이하여 사진을 교체한 여권 위·변조 사건, 은행대출 및 토지사기 사건, 범죄자의 신분위장,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불법고용 등 각종 범죄의 근원이 되고 있어 주민등록증 경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민들은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증과는 별도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되므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건수가 연간 1억7천만통에 달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으며,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은 주민등록증과 자격사항만 다를 뿐 기본 인적사항이 동일(운전면허증의 경우 면허번호, 적성검사기간, 소지면허, 면허조건만 다름)하기 때문에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여러기관을 방문해야 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주민카드 발급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주민카드 사업은 증명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국민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현재의 종이 증명을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제작하려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주민카드는 어떻게 제작되는가 ?

주민카드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민

등록, 인감증명서,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인적정보와 자격사항중에서 증명제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만을 추출하여 종이증명에 수기로 기록하는 대신 전자카드에 수록하여 제작하게 된다.

카드 겉면에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양과 기본 인적사항, 사진 등이 인쇄되고 IC내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의 내용과 운전면허 및 의료보험증의 자격사항 및 국민연금의 가입상황을 수록하는 데 이는 현재의 종이 증명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IC내에 수록하는 것이다. 주민카드를 발급한다고 해서 현재 국민들이 소지하고 있는 증명서의 내용보다 개인의 정보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정보는 없고 오히려 기재내용이 줄어들게 되며(현재의 의료보험증에 기재하고 있는 병원진료내역은 수록하지 않음), 현재 각 증명은 개인의 정보를 육안으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주민카드는 컴퓨터와 카드 판독기, 개인의 비밀번호가 있어야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측면에서는 훨씬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여러 가지 증명을 통합하고 전자카드로 제작한다고 해서 개인의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많은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 현재의 종이 증명을 모두 펼쳐놓고 주민카드와 비교해 본다면 어는 것이 개인의 정보를 쉽게 노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민카드가 발급되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행정기관, 은행 등에 제출하던 것을 주민카드로 대신하게 되며, 운전할 때는 면허증으로 병원에 갈 때는 의료보험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주민카드의 겉면에는 화폐수준 이상의 비표처리를 하고, IC내에는 강력한 보안장치를 내장하여 위·변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여권변조, 금융사기, 미성년자 불법고용 등 각종 사회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 사회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

주민카드의 효용성과 편리성면에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개인정보의 유출에 의한 사생활 침해와 국가에 의한 통제 가능성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사생활 침해는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대두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최근의 이한영씨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도 그의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에서도 주민카드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 개인정보보호 대책이다. 그러나 자동차 사고가 나고 다리가 건물 이 무너지면 인명 피해가 우려되니까 자동차를 만들지 않고 다리나 건물을 짓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본다. 문제가 우려되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아무 피해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이에 주민카드의 정보 보호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내용중 몇가지를 분야별로 소개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주민카드에 여러 가지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분실했을 경우 정보유출이나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주민카드는 플라스틱카드와 정보를 수록하는 반도체 칩(일명 IC)으로 구성된다. 플라스틱 카드는 한국조폐공사에서 화폐수준 이상의 제조기술을 도입하여 제작하게 되며, 사진 등의 변조를 막기 위해 사진을 전기적으로 인쇄한 후 레이저 조각기술을 이용한 특수보호막으로 카드 겉면을 보호하고 분실된 카드를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사진의 크기를 현재의 증명사진에서 반명함판 크기로 확대한다.

또한 정보가 수록되는 반도체는 업무분야별로 별도로 분리하여 정보를 저장하므로 교통경찰은 운전면허사항만 열람하는 등 소관 업무이외에는 타업무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되며, 별도의 비밀번호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허락 없이는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할 수 없다. 그리고 전자카드는 정보보호 특성상 비밀번호를 계속적으로 틀리게 입력하면 카드 스스로 정보의 출입구를 차단하는 잠금장치가 있어서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의 무단 열람이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백자의 열쇄(보안키)를 내장시키고 정보는 암호화된 문자로 저장하는 등 주민카드 하나에 10가지 이상의 보안장치를 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가장 뛰어난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해커나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우려이다. 각 단말기에는 보안카드가 있어 운용자외에는 자료의 열람이나 수정을 할 수 없으며, 자료를 전송하는 통신망은 공중 통신망(인터넷 등 일반 가입자의 통신망을 말함)과 완전 분리된 폐쇄 통신망을 사용함으로써 통신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해커 등의 침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료가 있는 센타의 주전산기에는 방화벽(Fire Wall) 등 많은 보안장치가 있어서 외부의 침입자를 차단하게 된다. 또한, 내부자에 의한 정보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모든 자료의 처리와 열람상황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처리내역과 열람자의 인적사항, 처리시간 등을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기록 보관하게 되며, 불법 유출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의거 “3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정보화 시대에 있어 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등 모든 전산망은 정보유출의 개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완벽한 보안장치를 설치하여 정보를 보호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카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만큼 세계적으로 가장 튼튼한 보안장치를 개발·설치할 계획이다.

주민카드는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인가?

주민카드가 발급되면 “모든 행적이 전자적으로 기록되므로 국가에 의해 열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하는 「전자 원형감옥」에 수감되는 꼴이고, 피부나 이마에 전자칩을 이식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한마디로 사실도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성도 없는 의견이다. 주민카드는 단순한 증명서일 뿐이다. 현재와 같이 주민등록사항과 운전면허, 의료보험 자격이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뿐이며, 본인이 필요에 의해 소지하고 본인의 승낙하에 카드를 제공하여 필요한 자격을 증명하거나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이와반면 은행의 신용카드는 사후 대금청구를 위해 호텔, 식당, 백화점 등의

모든 이용내역을 컴퓨터가 기록하여 관리하므로 개인의 행적이 남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카드를 현장에서 신분이나 자격만을 확인하므로 기록을 남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안기부가 사업에 참여한 것이나 지문을 수록하는 것은 국민을 감시,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안기부는 법적으로 국가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보안 분야에서는 전문가로 주민카드도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보안분야에 대해 일부 자문을 구한 적이 있을 뿐이다. 또한 지문은 삼풍사고 등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분을 보다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록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보의 집중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으나 주민카드를 초기에 일제 발급하는 경우 단기간내에 발급을 완료해야 되므로 정보가 일시적으로 집중되거나 발급이 완료되면 점차 각 기관으로 정보를 분산관리하게 된다. 이때 집중되는 정보는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전면허, 의료보험 등의 정보중 자격에 관한 극히 일부분의 정보만을 임시 저장하고 주민카드를 발급하는 용도 이외에는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과 전산망이 연계되므로 전산망에 연결된 모든 기관에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전산망은 주민카드를 발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정보를 통보받는 용도로 사용되며, 상대방의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제도적, 기술적으로 안될 뿐만 아니라 정보를 열람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금융전산망의 경우 타은행서비스를 위해서는 전은행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은행에서 전 은행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하면 타은행서비스를 실시하지 못할 것이다. 전산망내에는 서로 침범할 수 없는 기술적장치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주민카드는 프라이버시보호 권고안을 침해하는가 ?

경제개발기구(OECD)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권고안에 따르면 ① 개인정보 화일에는 비밀정보가 있어서는 안되며 ② 정보수집에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③ 정보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④ 정보주체는 정보공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⑤ 정보수집이전에 법규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⑥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권고안은 법에 의거 보장되고 있다.

첫째 주민카드에 수록되는 정보는 현재 주민들이 휴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의 내용과 주민등록등·초본사항, 등록인감, 국민연금 가입상황등 국민들이 신고하였거나 이미 알고 있는 사항으로 개인이 모르는 비밀정보는 전혀 수록되지 않는다.

둘째 수집되는 정보는 주민등록, 운전면허, 의료보험 등의 제도운영과 주민등록등·초본,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 각종 증명을 발급하는데 사용되고

셋째 주민등록사항이나 운전면허, 의료보험 정보는 모두 국민 스스로가 전입신고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의료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기재한 내용이다.

넷째 주민카드에 수록된 정보는 정보주체가 정보의 제공권한을 갖게 되어 있으며

다섯째 각 개별 정보의 수집은 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 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인감증명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고 마지막으로 주민카드에 수록된 모든 정보는 정보주체에 의해 언제라도 열람 수정이 가능하다.

주민카드사업은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는 전제하에 추진되는 사업이며, 국민편의와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주민카드를 발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앞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적·기술적 장치를 개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제 1 회 전자주민카드제 타당성 검토 회의

98. 5. 6. 회의
기획예산위

□ 배경

○ 행정자치부가 추진해 온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사업이 가지는 몇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및 막대한 예산 소요 가능성 때문에 그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TV 합동토론(97.12.15)에서 원칙적으로 전자주민카드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잠정 중지를 촉구한 바 있음(98.1.9, 98.2.5).

주민카드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은 2,000년까지 총 2,675억 원으로(기집행 : 485억원) 향후 더 많은 예산소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 기획예산위원회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을 30대 중점관리사업의 하나로 선정, 관련공무원 및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

□ 전자주민카드 관련 논쟁점

1) 프라이버시 침해

- 자료의 집중관리 문제 : 데이터베이스의 발급센터로의 집중
-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경우도 지나친 통제라는 문제제기
-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의 문제
- 수록 정보의 추가 가능성 문제
- OECD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권고안 준수여부 문제
- 비밀번호 유지와 카드분실의 문제
- 부실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률 문제

2) 막대한 예산소요

- 기 투자비용 문제
- IMF하에서 사업비 규모의 증대 문제
- 향후 1조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

3) 기타

- 불완전한 시스템 문제
 - 방화벽의 완전성 여부
 - 해커의 침입 가능성
 - 전산망 시스템의 불안정성
-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문제

4

□ 전자주민카드 사업타당성과 관련된 판단

- 전자주민카드 추진
- 플라스틱 카드 추진(IC 칩 제외)
- 현행 종이방식 추진

□ 향후 회의 추진일정 및 계획

- 5월 6일 (제 1차 회의)
행정자치부의 전자주민카드 추진현황 청취 및 쟁점 검토
- 5월 12일 (제 2차 회의 예정)
생점 및 타당성 검토
- 5월 13, 14일 시안 중간보고
- 5월 21일 토론회 개최 여부
* 델파이 실시 여부
- 5월 25,26일 최종안 보고

< 전자주민카드제 타당성 검토 회의 참여자 명단 >

이름	직장 및 직위	직장 전화	직장 팩스
신철식과장 (유호석 사무관)	예산청 교육정보예산담당관	503-9110 (81+82+5139)	503-6790
김치행 과장	행정자치부 주민과장	3703-4863 720-2067 (81+4861)	3703-5544
권기현 교수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961-0457	967-1483
최종욱 교수	상명대 정보학과 교수	287-5214	287-5160
문신용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실장	564-0772	564-2158
박수영 팀장 정용남 박사	기획예산위원회 행정개혁단 행정 2팀	734-9243	725-3986

박수영 (2room) 4860

프린트 110대 380-5601
프린트 110대 5634

110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관련

행사부의
추미애 의원실 명목으로

[1] 주민카드제 시행 반대 논거

- 04275576354 08178138 08:45:00
- 0857535004 08178138 08:48:37
- 0857738500 08178138 08:50:40

[2] 주민카드제 시행 찬성 논거

- 0327514411 08178138 08:50:38
- 0524229741 08178138 08:58:22
- 055138238 08178138 09:20:58

[3] 보완 계획

- 0275234001 08178138 08:47:03
- 051447414 08178138 08:50:13
- 0534172122 08178138 08:48:58

[부록] 방안별 비용 및 효과 분석

- 07278175 08178138 08:47:33
- 052852474 08178138 08:47:33

대외의견수렴	실용성	비용	효과
04753005	023003		
실용성수준	실용성	비용	효과

다음 목록은 정지된

8

1. 주민카드제 시행반대 논거

□ 개인정보의 집중으로 인한 국민 사생활 침해 우려

· 진산시스템의 불안정성 및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존재

□ 주민카드의 수록내용(기능) 축소로 인한 유용성 약화

· 당초계획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국민연금증서, 의료
보험증,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등 6개 증명 통합

· 실행계획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3개 증명 통합

1. 주민카드제 도입초기 소요비용 과다

· 예상 소요비용 : 2,675억원(행정자치부), 2,974억원(감사원)

· ※ 플라스틱 카드방식 : 970억원(행정자치부), 865억원(감사원)

· 행정자치부 예산소요 판단 계획은 향후 주민카드 발급에 소요
되는 국비 총 1,400억원중

· 카드발급 착수금은 '97년도 정부예산으로 241억원 기확보

· 전금 총 1,159억원은 2000년~2002년의 3개년도에 걸쳐 확보할

계획이며, 인간 386억원의 예산은 '98년 행정자치부 사업

예산(2,521억원)의 약 15%임

· 주민카드 열람기 및 인감인식기 설치에 따른 민간부담 필요

· 120억원~140억원(행정자치부), 230억원~1,500억원(감사원)

외용 용은 조지

8

[] 주민카드제 유지·관리 비용의 과다

- 연간 187억원(행정자치부), 205억원(감사원)

※ 플라스틱카드제 도입시 연간 128억원(행정자치부), 60억원(감사원)
소요예상

[] 주민카드제 도입의 경제적 기대효과 감소

당초추계(6개 증명 통합) : 10년간 7조4천억원(한국전산원)

- 현행추계(3개 증명 통합) : 10년간 4조1천억원(행정자치부)
10년간 2조5천억원(감사원)

[] 주민카드 수록내용 수정에 따른 국민불편 가중

주민카드에 세대사항이 수록되어 있어, 가족구성원 일부의
가족사항이 변경(출생, 사망, 혼인, 이혼, 세대분가 등)될 경우
타 가족 구성원의 주민카드 역시 수록내용을 수정하여야 함

[] 이미 10여회에 걸쳐 공청회가 개최되고 법률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제도도입에 대한 정치권 일부, 법조계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아직 미흡한 수준임

공청회 주관기관 : 내무부(4회), 국회(1회), 시민단체(5회) 등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제도도입에 대한 적극 반대

2. 주민카드제 시행 찬성 논거

[1] 현행 주민등록증의 시급한 경신 필요

'83년의 주민등록증 일제정신 이후 15년 경과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통한 범죄의 발생 증대
주민등록증 매매후 범죄 이용

[1] 국가정책의 대국민 신뢰성 축적 필요

「주민카드제」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97. 12. 17)
제도도입 유효시 '98. 11까지 주민등록법 재개정 필요

[1]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현행 방식에 대한 우위성 확보

주민등록증 :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변경내역),
호주, 병역사항, 지문 등의 기재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과다

주민카드 :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만 인쇄되고 주소, 호주,
세대사항, 병역사항, 지문, 인감, 등은 IC칩에
수록되어 개인정보 유출 억제

※ 플라스틱 카드 : 현행 주민등록증의 경우와 동일

[1] 행정효율성 제고에 관한 정치적 요구에 대응

주민등록원장의 폐지 및 증명발급의 감축으로 약 5천명의
공무원 감축 예상(행정자치부, 감사원)

유·면·동 기능진화에 있어서 비록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인력감축 및 사무조정 등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침

※ 플라스틱카드제 도입시 주민등록원장의 폐지로 인하여
3천여명의 공무원 인력감축 예상(감사원)

□ 경제적 효과성 확보

행정자치부 : 10년간 4천5백억원의 투자로 4조1천억원 효과
(약 9배의 투자효과)

감사원 : 10년간 6천3백억원~9천억원의 투자로 2조5천억원
효과 (약3~4배의 투자효과)

※ 감사원 : 플라스틱카드제 도입시 10여년간 1천5백억원의
투자로 5천6백억원 효과(약 4배의 투자효과)

※ 현행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우선 경신하고 향후
기발급된 카드에 IC칩을 삽입하는 단계별 제도도입에 관한
의견 역시 제기되고 있으나,

- IC칩 삽입시 카드회수 및 임시카드 발급에 따른 행정관리
비용 및 인쇄부분과 IC칩 수록내용의 일치 확인 비용
등의 과다로 인해

오히려 신규발급이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됨

□ 대국민 정보화마인드 구축과 정보산업 시너지 효과 확대

현재 각종 기업체 및 대학교 등에서 전자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자주민카드제의 시행으로 금융·통신·교통 등
각 분야에 유사카드 사용 확산 전망(약 3억장 이상 사용 예상)

비메모리 분야 반도체산업 등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

(감사원 : 향후 10년간 약 2천5백억원의 산업 연관효과 추정)

이미 한국조폐공사에서 플라스틱 및 전사리본 제조 국산화
성공('97년 1/4분기)

3. 보 안 세 획

[1] 주민카드제의 시행에 대한 과학적인 홍보전략의 마련

제도도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의 지속적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의 조기 형성 필요

주민카드 추진협의회 및 기획단 재편성(시민단체 참여확대)

대중 방송매체를 이용한 국민토론회 개최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제도도입 타당성 홍보

중립적 학술단체에 의한 세미나 개최 지원

제도도입을 지방행정개혁의 주요시책으로 추진하는 방안 연구

[2] 주민카드제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

주민카드제 운용계획 전반(발급 및 보안체계 등)의 면밀한

정책진단의 실시로 문제점 미연 방지대책 강구(1998. 5 ~ 8)

주민카드제 운용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시 행정보상제도 마련

부인발급기를 통한 주민카드 수록내용 수정시스템 구축 검토

<부록> 방안별 비용 및 효과 분석

(단위 : 억원)

구분	프라스틱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감사원	행자부	감사원
총계	970	865	2,795~ 2,815	3,204~ 4,474
상부부문	970	865	2,675	2,974
연간부문	-	-	120~140	230~ 1,500
유지관리(10년)	1,280	600	1,870	2,050
총계	-	5,600	41,000	25,000
상부부문	-	5,600	24,200	9,100
연간부문 (10년)	-	-	16,800	15,900

~~김대중후보의~~

12 13:41 FRI FROM:NAM BU JI WON.
FROM: 026766234

02-2-672-3337

TO:7743155

PAGE:01

001

행정자치부의
정인환의원사(내무위 감사) 성득과를

전자주민카드 관련

- 대선시 김대중후보의 전자주민카드 원칙적 반대의 철회여부
- 행정자치부 '99년 예산요구내역(현재상황)
- 주민등록법 재개정 계획 및 그 내용
- 주민등록세와 관련 각종 법령이나 규칙변경 건의서 및
대안서 목록

**II 대선시 김대중후보의 전자주민카드 원칙적 반대의
철회여부**

- 지난 '98. 5. 11 대통령께 행정자치부의 주요현안업무분
보고하면서 『주민카드사업은 국가경제사정과 비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연구기관과 관련기관·단체의 의견을
참고하여 추진방안을 결정할 것을 보고한 바 있음
- 앞으로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관련기관·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2] 행정자치부 99년 예산요구내역(현재상황)

○ 예산요구내역 : 총 32,241백만원

카드구입비 30,000, 공공요금 464, 시설장비유지비 1,554, 기타 223

4

[3] 주민등록법 재개정 계획 및 그 내용

○ 재개정 계획 없음

[4] 주민등록제와 관련 각종 법령이나 규칙변경 건의서
및 제안서 목록 : 별첨

주민등록제도 관련 제안서 목록

(총 10건)

1.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책 건의
 - 주민등록증 접착시 사동칼라 압인기를 발명 활용 제안
 - 사전교체시 색이 분산 등 위·변조 구별용이
2. 미성년자 주민등록증 구분 발급
 -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증을 황색으로 발급하여 단속시 편의도모
3. 주민등록지가 아닌 타지역에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 전국 온-라인을 이용,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전입 신고가 가능토록 개선
4.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 설정
 -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10년등)을 법령에 규정
5.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주소에 호수 기재
 - 다가구용 단독주택에도 층·호수를 기재토록 하여 우편물 등 우송시 국민편의도모
6. 주민등록번호 부여제도 개선
 - 지역번호(4자리)를 없애고, 주민카드발급센터에서 일괄부여
 - 지역감정 해소 및 읍·면·동의 업무감축 등 효율성 제고

※ 정식문서가 아닌 실무 메모임

수신 : 전자주민카드시행반대 등을 위한 공동대책위 귀중

발신 : 감사원 제6국 제1과 유종남 전화 : 7219-611

제목 : 정보(부분공개)에 따른 감사결과 권고안 1건 사본 5매 송부

-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서(육일 12430-124, '98.7.10)의 관련임
등 결정서는 98.7.10 등기우송 하였음.
- 1998.7.11. 11:15경 귀 대책위 간사 이상섭씨와의 통화결과 귀 대책위에
서 낭위를 방문하여 복사하여 가는 불편을 덜기 위하여 공개하기로 한
감사결과 권고안 1건에 대한 사본 5매를 등기 우송합니다.
- 참고로 등기우송료 외에 수수료가 1매당 250원씩 1,250원임을 알려 드
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권 고 사 항

번호	11	중앙행정기관	행정자치부	관계기관	행정자치부 본부
----	----	--------	-------	------	----------

제 목 : 주민등록증 경신방안 부적정

1. 내 용

1995. 3. 15. 현 주민등록증을 전자카드로 경신하기 위한 주민등록증 경신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996. 5. 14. 전자주민카드 발급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에 있어

위 전자주민카드 발급사업은 각 개별법령에 따라 발급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지문 등 7종의 기능을 하나의 전자카드에 수록한 「국민종합복지카드」를 도입하여 국민편의 및 행정능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시작된 사업이었으므로

가. 수록내용이 축소 조정되어 전자주민카드 도입 타당성이 떨어진 때에는 <별표> “주민등록증 경신방안 비교”와 같이 검토 가능한 제 대안을 비교하여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위·변조가 어렵고 또한 도입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카드(제작비 315억원 소요, 1매당 900원)도입 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음에도

당초 수록대상인 7종 42개 기재항목이 1997. 12. 17. 주민등록법 및 인감증명법 개정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지문, 인감(선택) 등 4종 10개 기재 항목으로 축소되어

현 주민등록증 기재항목에 「세대사항」과 「인감」사항만 추가된 것으로 당초의 다기능 카드인 「국민종합복지카드」로서의 기능이 퇴색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대사항과 인감사항만 제외하면 주민카드 표면에 모든 내용을 기재할 수 있어 IC(Integrated Circuit)칩을 부착할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도 사업계획을 변경

하지 아니하고 있고

나. 소요사업비는 재발급비 등의 유지관리비, 전자주민카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이용장비의 설치비 및 민간부담 등 전체 관련비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주전산기 구입비 및 S/W개발비, 카드제작·발급비, 주민카드발급센터 구축비 등 일제경신에 소요되는 정부부담의 초기투자비 계2,675억원만을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동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2,675억원의 초기투자비 외에 전자주민카드의 경신주기를 10년으로 볼 경우 분실자에 대한 재발급비 및 만17세가 되는 자에 대한 신규발급비 등 10년동안의 유지관리비 2,050억원, 환율인상(미화 1달러당 840원→1,300원)에 따른 추가부담액 153억원,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기, 주민카드열람기, 인감판독기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설치비 146억원 등 계 2,349억원 상당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부담 사업비가 계 5,0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는 열람기 및 판독기는 많이 설치할수록 민원인은 편리해지나 민간부담은 그만큼 늘어나게 되어 열람기는 금융기관 등 전 사업체에 1~2대씩, 인감판독기는 100인 이상 사업체에 각각 1대씩만 설치하더라도 1,523억원 상당의 민간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총 소요비용은 6,547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다. 전자주민카드를 이용한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의 발급 감축과 이에 따른 인력감축효과는 동 카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발급기, 열람기 등 이용장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제증명의 발급 및 이용관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현 가능한 기대치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연간 1억7천만통의 제증명 감축과 이에 따른 5,000여명의 인력이 감축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1)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증명 실적은 열람 39백만건(40%), 초본발급 10백만건(10%), 등본발급 48백만건(50%)등 계 97백만건으로서 그중 열람민원은 주로 제3자가 타인의 주민등록자료를 읍·면·동에 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전자주민카드가 발급되어도 증명감축효과가 없고 등·

초본 발급민원은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On-Line원격지」 발급으로 읍·면·동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 주민등록법(1997.12.17. 법률 제5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2의 규정에 따르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초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의 9의 규정에 따라 증명교부 대신 현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보다 정착·발전시키면 등·초본 발급민원의 대부분을 전산자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주민등록등·초본의 증명 감축을 위해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할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인정되고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주민카드에 의한 제증명의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기」를 민원인이 읍·면·동에 갈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설치하여야 하나 이 경우 설치비 및 장비의 유지관리·운영에 따른 제반문제점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고 발급기 대신 같은법 제17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주민카드 「열람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증명 기능이 미흡하여 관인이 날인된 증명요구시 감축 효과가 의문시 될 뿐만 아니라 열람기 설치에 따른 민간부담 문제 등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의 증명발급 감축효과는 당초 계획대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며

(2) 인감증명은 연평균 48백만건이 발급되고 있으나 「인감」은 재산권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성 때문에 전자주민카드에 선택적으로 수록하는 것으로 규정한 결과 인감이 수록되지 아니한 주민카드는 증명의 감축효과가 전혀없고, 인감이 수록된 주민카드의 경우에도 인감증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인감판독기가 신고인감과 소지인감의 동일여부만을 판독할 수 있어 관인이 날인된 증명요구시 인감증명의 감축효과도 당초 계획대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3) 또한 전자주민카드로 제증명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제증명의 발급 및 민원서류의 접수를 타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고, 타기관을 경유하는 민원도 본인이 직접 경유기관 및 접수기관에 가야 하며, 특히 사인간의 부동산 매매시에도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 양도자·양수자 모두 등기소에 가서 주민카드를 제시해야 하는 불편 등 그 운용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라. 전자주민카드는 하나의 카드에 세대원 전원을 수록한 결과 세대원의 출생·사망·결혼 및 주소 등의 변경시 전체 세대원의 주민카드를 모아서 함께 수록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원증 변경처리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 동 카드로는 주민등록자료의 신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읍·면·동에 가서 증명을 발급받아야 되는 등 전자주민카드 발급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위 “가”항 내지 “라”항의 실시내용과 같이 다기능 신분증의 기능 상실, 소요사업비의 증가, 제증명감축효과의 불투명 등 많은 문제점과 이용상 불편이 예상되는데도

위 사업계획을 재검토·수정함이 없이 1998. 1. 14. 사업비만 당초 2,735억원에서 2,675억원으로 줄여 2000. 4월부터 전자주민카드를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2. 조치할 사항(권고)

추진중인 전자주민카드사업과 관련하여 수록사항이 축소되었는데도 소요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등의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재검토하고 주민등록증 경신방안에 관하여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및 사회성 등을 고려하여 위·변조 방지기능이 우수하면서도 비용이 적게드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 요망된다.

<별표>

주민등록증 경신방안 비교

방안 별	제 1 안	제 2 안	제 3 안	제 4 안
	현행 종이증	사진인화방식	플라스틱카드	전자주민카드
제작방법	종이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인후 비닐을 씌워 제작	종이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여 카메라로 촬영한 후 인화된 사진에 비닐을 씌워 제작	비표 등 도안이 인쇄된 플라스틱 카드에 사진과 인적사항을 인쇄한후 홀로그램을 도포 제작	플라스틱카드 제작방식 + IC칩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수록 제작
정부부담 투자비	142억원 · 증 70억 (1매당 200원) · 장비 등 72억	337억원 · 증 245억 (1매당 700원) · 장비 등 92억	865억원 · 카드 315억 (1매당 900원) · 시설비 등 550억	2,974억원 · 카드 2,253억 (1매당 6,438원, 1,300원/\$) · 시설비 등 575억 · 발급기 등 146억
연간유지비	15억원 · 증 6억 · 경비 9억	31억원 · 증 21억 · 경비 10억	60억원 · 카드 27억 · 경비 33억	205억원 · 카드 155억 · 경비 50억
비 고	· 사진교체 등 위·변조 용이	· 제1안보다 위·변조 방지 개선(사진인화) · 주소변경 정정가능	· 비표, 홀로그램 도포로 위·변조 곤란 · 민간부담 없음 · 주소변경 정정가능	· 위·변조방지 기능 탁월 · 기능 다양 · 주소변경 등 정정가능

① - 3

이의 자료		
198		
5/12	134-1	24

정보 공개 청구서

청 구 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의 12 명지빌딩 4층(전화 : 522-7284, 팩스 : 522-7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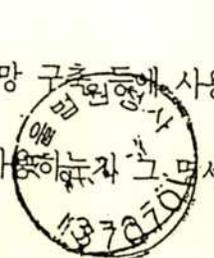
대표자 회장 최 영 도

피청구인 내무부장관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표시

1. 1995. 3. 15.자 "주민등록증 갱신 기본계획", 이에 따른 세부계획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정보
2. 1995. 4. 18. 국무회의에 보고된 "주민등록증 갱신 기본계획"에 관한 정보
3. "주민등록공동활용계획"에 관한 일체의 문서 등의 정보
4. 전자주민카드사업중 1996년도에 발급센터 구축, 업무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예산의 세부사용명세와 이 사용예산은 1996년 예산안중 어느 항목에서 사용하였는지 그 명세(예 : 주민등록증 갱신사업비 항목의 얼마중 얼마) 등에 관한 정보
5. 1997년 전자주민카드사업중 카드구입 및 발급, 발급센터 구축, 운영망 구축등에 사용할 예산의 세부사용명세와 이 예산은 1997년 예산안중 어느 항목에서 인출하였는지 그 명세에 관한 정보



이 우편물은 19년 월 일 동기 *홍대* 호에 의하여 내용중명 우편물루 발송되었음을 증명함.
서울법원청사 우체국장

6. 전자주민카드사업에 참여할 전담사업자 선정에 관한 일체의 정보

① 전담사업자를 선정할 사업분야 명세서(카드제조, 카드발급기제조, 칩제조, 카드판독기, 중앙전산기, 휴대용면허확인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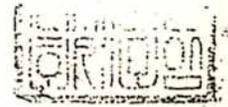
② 사업자 선정의 기준과 선정일정

③ 이미 시행한 각 사업별 전담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와 입찰참여업체에 관련된 서류 일체

④ 이미 확정된 각 사업별 전담 사업자(참고 : 전자신문 1996. 12. 16.자 기사 '기아정보서 전자주민카드 영상 입력시스템 공급권 수주', 전자신문 1996. 12. 14.자 '삼성전자 주민전산망용 PC납품권 획득' 등)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

⑤ 구매할 주전산기의 사양과 기술적 수준에 관한 일체의 서류

7. 전자주민카드의 1개당 예상가격과 산출근거 및 그 내역에 관한 정보



8. 전자주민카드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1조원이상이라고 산출한 근거서류, 한국전산원이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대한 경제성 및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보고한 보고서(투자에 비하여 23.5배의 높은 경제적 실익이 있다는 등의 내용) 등 관련 정보

9. 주민망 설치계획, 관리계획, 주민망 사용계약서 등 주민망 관련 일체의 정보

공개방법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받고자 함

370701

청구이유 및 사용목적

1. 청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전문단체로서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 200여명의 변호사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음.

2. 정부는 내무부를 주무부서로 하여 1998년부터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등 7개 증명서를 통합하여 이를 IC칩을 내장한 전자카드에 수록하는 이른바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고 전 국민에게 그 소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3. 하지만 우리는 이 제도가 모든 국민의 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 헌법 이 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적법절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여러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제도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회의 입법을 거친 이후에야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데,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나아가 분명한 법률적 근거도 갖추지 않은채 예산을 집행하고 전담사업자를 선정하는 등의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

4. 이에 청구인은 이른바 '전자주민카드'의 발급계획이 헌법과 법률에 적합한 것인지,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예산의 집행과 사업자 선정과정이 적법, 적정한 것인지 검토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연구, 조사하고자 하나, 관련된 자료의 부족으로 연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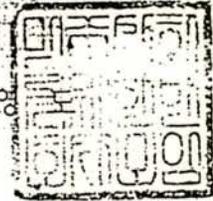
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이 청구를 하는 것임.

정부정책은 법률가 단체 등 관련 전문가단체들의 관여에 의하여 그 효율성이 제고되고 적법성의 보장이 확고하게 되는 것이니만큼 조속히 위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여 주기 바라는 바임.

1997. 2. 3.

청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자 회장 최영



내무부장관 귀하

970701

전자주민카드 정보공개자료

1998. 7. 10

행정자치부

1.2. 전자주민카드 추진정책 및 장관입장

- 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주민카드사업에 대하여 관련법이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재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고, 당시,내무부에 관련예산 집행을 감사결과 통보시까지 보류 하도록 요청한 바 있음
- 그후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부임하여 이 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연구기관 등 폭넓게 의견을 듣고 있음
- 기본적으로 현행 주민등록증은 시급하게 경신하여야 하나 어떠한 방식으로 경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음
- 플라스틱카드는 비용이 적게 들지만 기능이 단순하고 위·변조 방지가 완벽하지 못해 비용낭비 우려가 있고 전자주민카드는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고 기능이 다양하여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대비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나 최근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할 때 투자비용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다만, 우려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해결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음

- 아직은 어떤 방향의 결정도 내려진 상태는 아니며 저는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결론을 얻기 위해 지난 5월 학계와 민간 연구기관에 경제적·기술적 타당성과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분석 용역을 의뢰한 바 있음.
- 앞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연구용역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그동안 각계에서 제기한 문제점 등을 포함한 최종적인 판단을 조만간 결정토록 하겠음.

3. 전자주민카드 관련 예산청구일자와 내역

- 별첨 1

4. 전자주민카드 효율성 연구용역자료

- 별첨 2

'99전자주민카드 예산요구내역

□ 예산 요구일

- 행정자치부 예산요구서 제출일 : '98. 6. 1

□ 예산 요구내역.

- 총 322억원
 - 주민카드 구입비 : 300억원
 - 시설장비 유지비 : 16억원
 - 통신회선료 등 : 6억원

□ 예산 요구사유

- '98.12.17 주민카드시행 근거법인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98. 12월부터 주민카드발급을 시행토록 함에 따라 행정부에서는 법을 집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임
- 다만, '97.12월 제15대 대통령선거후보자 TV 토론에서 현 대통령께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부터는 감사원 감사완료시까지 예산집행을 보류하라는 통보는 있었으나
 - 국회 또는 대통령으로부터 법집행을 정지하라는 공식적인 결정이 없었고
 - 우리부에서도 사업추진방안에 대해 재검토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정책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 국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개정된 법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집행을 정지할 수 없어 예산을 요구한 것임

주민카드事業
效率的 推進方案 研究計劃

住 民 課

주민카드事業 效率的 推進方案 研究計劃

① 研究의 必要性

- 주민카드사업에 대한 찬·반 논의가 계속
⇒ 찬·반 논거를 중심으로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주민카드제 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미흡
⇒ 정보 유출·악용 우려에 대한 불신 제거 및 대국민 설득 필요

② 研究 基本方針

- 외부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의뢰하되 연구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학연구소 등 독립적 순수 연구기관에 의뢰
- 연구대상을 사회·기술·경제효과 등 3개분야로 구분, 검토시엄 형태로 추진
- 지정 연구기관과 적극 협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완료 하여 종합보고

③ 主要 用役內容

가. 연구기간 : 5. 15 ~ 6. 10(27일간)

- 연구기관 용역의뢰(5. 15 ~ 6. 5)
- 연구결과 취합 및 보고(6. 5 ~ 6. 10)
· ※ 계약시연 등으로 연구보고기간이 7월중으로 조정됨

나. 연구 방법

- 사회적측면, 기술공학적측면, 경제효과적측면으로 구분 연구
-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
- 각 분야별 연구결과를 1개기관에서 취합 총괄 보고서 작성

다. 연구용역 의뢰 대상기관

구분	사 회 학	기술공학	경제효과
대 상 기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신기술공동연구소 (탁승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김병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공대 정보통신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공공경제학회 (최 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희대 사회과학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능률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대 행정문제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스템공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생산성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정보문화센타내 지역정보화본부(한영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통신공사 멀티미디어 연구소 	

※ 국책연구소 및 사기업체 연구소 제외

④ 主要 研究事項

< 사회적측면 >

- ① 주민카드제 시행관련법규의 타당성 검토
- ② IMF체제하에서 주민카드사업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
- ③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호에 관한 영향 검토
- ④ 중앙정부의 개인정보 집중관리에 의한 영향 검토
- ⑤ 행정간소화를 통한 일반국민의 편의성에 관한 영향 검토
- ⑥ 주민카드제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 가능성 검토
- ⑦ 읍·면·동 기능전환 등 타 국가시책관련 영향 검토
- ⑧ 주민카드 위·변조방지 및 이로인한 각종사회범죄 방지효과
- ⑨ 주민카드제 시행과 행정개혁과의 연계성 검토
- ⑩ 주민카드제 시행유보 결정시 사회적 영향 검토 등

< 기술공학적측면 >

- ① 주민카드 발급센터의 주전산기 및 전산망의 안정성 검토
- ② IC칩 구성체제의 적정성 검토
- ③ 주민카드 보안장치의 안전성 검토(알고리즘, 잠금장치, 홀로그램 등)
- ④ 주민카드 발급·재발급 과정에 관한 기술적 검토
- ⑤ 주민카드 열람기 및 인감인식기에 대한 기술적 검토
- ⑥ 주민카드 열람기의 PC 기본장치화에 관한 기술적 검토
- ⑦ 주민카드 관련기술의 타 산업에 대한 이전효과 검토 등